

# 생활관 운영 내규

제정 2014.09.01.

개정 2025.06.10.

**제1조(목적)** 이 내규는 상지대학교 생활관(이하‘생활관’이라 한다)의 생활관 운영규정 제17조(선발), 제20조(납입금), 제25조(게스트룸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관생 선발

**제2조(신청)**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선발기간 중에 소정의 신청서를 생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조(입사자격)** 원주시 지역 관내(부론면, 지정면 제외) 외 지역 거주자. 단 생활관 운영규정 제16조(입사결격사유)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자격을 제한한다.

**제4조(선발)** 생활관장은 제출된 서류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.

① 신입생(입학년도 1학기)

1. 통학거리 60%, 입학성적 40% 비율로 점수를 적용하여 선발한다.
2. 수시, 정시, 추가 모집과 정시 미등록충원에 따른 인원 비율은 모집인원 등을 고려하여 생활관장이 정한다.
3. 특정 학부 및 학과(전공)에 편중되지 않도록 신청비율에 따라 인원을 배분할 수 있다.

② 재학생(전체 학년, 1학년 2학기 포함)

1.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으로 선발하되, 직전학기 생활관 및 행복기숙사 생활점수를 1점당 0.5점의 가산점으로 반영하여 총점 기준으로 선발한다. (개정 2025.06.10.)
2. 직전 학년도 관생으로 생활한 자 중 상점우수자 또는 교내 프로그램 참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한하여 우선선발 할 수 있다.(상위1-3등)
3. 1학년 1학기로 복학예정자의 경우는 신입생 선발 기준에 의한다.

**제5조(우선선발)** ① 생활관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, 보호종료아동쉼터 입·퇴소 청소년, 다문화가정 자녀 등이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선발 할 수 있다.

② 생활관장은 학교로부터 거리, 상담결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자를 우선선발 할 수 있다.

**제6조(선발비율)** 생활관장은 입사정원을 기준으로 1학년(신입생) 65%, 2학년 15%, 3학년 15%, 4학년 5%의 비율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지원 비율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.

**제7조(추가선발)** 입사정원에 미달되는 인원은 추가선발 할 수 있다.

**제8조(허가공지)** 생활관장은 평가절차에 따라 선발된 관생에게 입사허가 공지를 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입사시기)** 생활관의 입사 시기는 매학기 초 3일 이내로 한다.

## 납입금

**제10조(생활관비)** ① 관생은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생활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생활관비의 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관생관리비 : 교비로 편성하여 생활관 운영경비, 유지보수관리비 및 건물, 시설설비, 기계기구, 집기비품 등의 감가충당금으로 사용한다.
2. 관생회비: 관생회비는 생활관비에 포함하여 징수 후, 일괄 인출하여 관생회장에게 인계한다.
3. 특별(임시)개방 사용료 : 특별(임시) 개방으로 발생된 수입금은 생활관장이 징수하여 교비에 입금

처리한다.

4. 수도광열비 : 생활관 수도광열비로 사용된다.

③ 생활관비는 생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#### 제11조(생활관비 납부)

① 생활관비 중 관생관리비는 다음과 같이 납부한다.

1. 입사시기에 따른 납부

입사시기	납부비율
개강 4주 이내	전액 납부
개강 6주 이내	80%
개강 8주 이내	65%
개강 10주 이내	50%
개강 10주 이후	40%

2. 다음과 같은 경우 관생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.

가. 체육특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부 재학생 : 관생관리비 100% 감면

나. 운동부 숙소[승리관(민음관), 소프트볼 단체숙소(맑음관)]에 거주 중인 학생은 관생관리비 100% 감면

② 관생회비는 전원 납부한다.

③ 특별(임시)개방 사용료는 1인 1박 기준으로 납부한다.

④ 입사시기에 따른 수도광열비 납부비율은 관생관리비 납부비율과 동일하게 납부한다.

#### 제12조(생활관비 환불)

① 관생이 원하여 학기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생활관비는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.

1. 관생관리비는 입사기간 전일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하며, 입사기간부터의 환불은 입사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15%를 공제(위약금)한 후 환불하되, 잔여일이 30일 미만일 경우 잔액을 환급하지 않는다.

2. 관생회비는 입사기간 전까지 환불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전액 환불하며, 입사기간부터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
3. 수도광열비는 관생관리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환불한다.

② 생활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강제퇴사 되는 경우 관생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는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한 금액에서 공제금(관생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총액의 15%)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. 다만, 관생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
③ 특별(임시)개방 사용료 환불은 다음과 같이 환불한다.

1. 계절학기 및 장기이용자는 1인 1박 기준금액을 잔여일수만큼 적용하여 환불 한다.

2. 단기이용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
④ 환불액은 퇴사 후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퇴사신청서에 기재한 계좌 또는 관생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 처리한다.

## 게스트룸

제13조(사용신청) 게스트룸은 사용하고자 하는 전 주 금요일 오전까지 생활관사무실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14조(배정원칙) ① 생활관장은 게스트룸 사용가능실수를 감안하여 초청인사를 우선배정하고, 사용빈도가 낮은 사람 순서로 배정한다.

② 교내 구성원 중 신청자가 많은 경우, 주 2일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사용방법) ① 게스트룸 사용을 허가 받은 후 사용 당일 생활관사무실에 방문하여 게스트룸 사용

대장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생활관 출입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한다.

② 사용자는 생활관 출입카드를 익일 퇴실 시에 생활관사무실에 반납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사용시간)** 게스트룸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7:00 부터 익일 12:00까지로 한다.

**제17조(사용료)** ① 사용료 납부는 급여공제 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 하여야 한다.

② 사용료는 생활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.

**제18조(변상 및 책임소재)** 게스트룸 사용 시 고의, 안전, 파손 등에 대한 변상 및 책임소재는 생활관 준칙 제11조(변상책임), 제13조(안전관리 및 청소책임)의 안전관리 조항, 제14조(제규정 준수 및 책임소재)의 책임소재 조항)에 준하여 해당사항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중전의 생활관 내규는 2014년 06월 25일 생활관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23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23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2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24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1조 제1항 2호 가목의 체육특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부 재학생에 대한 관생관리비 감면은 2023학년도, 2024학년도 입학생까지 적용하고,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24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운영 내규는 202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운영내규는 2025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(경과조치) 제4조 제2항 제1호의 생활점수 가산점 반영에 관한 사항은 2026학년도 1학기 입사자부터 적용한다.